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3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u>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77-129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пм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	주자 및	비그레티션		
민영	(2023.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공	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힌	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ኒ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0.31(목)	2024.11.11(월)	2024.11.12(화)	2024.11.13(个)	2024.11.21.(목)	2024.11.24.(일) ~ 2024.11.26.(화)	2024.12.02.(월) ~ 2024.12.04.(수)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 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	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 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르딘ㅇㅂ	문제를 증업시 한경상법에 띄금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화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il-gs.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한저축으로 전화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화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0		0	0	0	0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hometax.q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0.31. 이 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1.11.(월)	2024.11.12(화)	2024.11.13(수)	2024.11.21.(목)	2024.11.24.(일) ~ 2024.11.26.(화)	2024.12.02.(월) ~ 2024.12.04.(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광주시 송정등	5 678-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 1)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4)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5)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기납부한 금액이 총 분양가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주택과 - 49355호(2024.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6번지(곤지암역세권 A1-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22층 7개동 총 565세대

[특별공급 273세대(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5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m²)

T = 11	모델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²)		기타계약	세대별 총공급	총공급			특별공급	급 세대수			OIHLTT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대지지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8372A	59A	59.8372	19.7766	79.6138	41.7794	121.3932	39.8095	152	15	15	27	4	13	74	78	8
	02	084.9050A	84A	84.9050	26.3607	111.2657	59.2822	170.5479	56.4871	242	24	24	43	7	21	119	123	12
2024000637	03	084.9876B	84B	84.9876	26.5661	111.5537	59.3399	170.8936	56.5420	84	8	8	15	2	7	40	44	4
	04	084.9264C	84C	84.9264	26.3792	111.3056	59.2972	170.6028	56.5013	87	8	8	15	2	7	40	47	4
					합 계					565	55	55	100	15	48	273	292	28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 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공급금액 해당 공급 층 주택형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30%)(약식표기) 세대수 구분 세대수 계약일로부터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5.06.25 2025.10.17 2026.03.20 2026.08.21 2026.12.18 2027.04.16 입주지정일 30일이내 1층 2 310.331.000 426,750,000 10.000.000 32,675,000 42,675,000 42,675,000 42.675.000 42,675,000 42.675.000 42,675,000 128.025.000 2층 8 315.581.000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3층 8 321,581,000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59A 152 116,419,000 4~6층 24 326.581.000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7~9층 24 329,581,000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0층 이상 86 332.581.000 449.000.000 10.000.000 3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47,000,000 1층 2 570,000,000 1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404,809,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2층 12 414.809.00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3층 12 422,809,000 588,000,000 10.000.000 4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84A 242 165,191,000 4~6층 36 428,809,000 594,000,000 10.000.000 4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7~9층 599.000.000 10.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36 433.809.000 49.900.000 179,700,000 60,300,000 10층 이상 144 437,809,000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1층 4 571,000,000 57,100,000 405,648,000 10,000,000 4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71,300,000 58,100,000 2층 4 415.648.000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3층 4 423,648,000 589,000,000 10.000.000 4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76,700,000 84B 84 165,352,000 12 4~6층 430,648,000 596,000,000 10,000,000 4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7~9층 12 435.648.000 601.000.000 10.000.000 5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10층 이상 48 439,648,0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층 4 405,809,000 571,000,000 10.000.000 4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71,300,000 2층 4 415,809,000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3층 4 423,809,000 589,000,000 10,000,000 4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76,700,000 87 84C 165,191,000 4~6층 12 430,809,000 596,000,000 10.000.000 4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50.100.000

50,500,000

60,100,000

60,500,000

60,100,000

60,500,000

60,100,000

60,500,000

60.100.000

60,500,000

60,100,000

60,500,000

60,100,000

60,500,000

180,300,000

181,500,000

7~9층

10층 이상

12

51

435,809,000

439,809,000

601,000,000

605,000,000

10,000,000

10,00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법 시행령」제60조 규정에 의거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059.8372A	084.9050A	084.9876B	084.9264C
약식표기	59A	84A	84B	84C

- ※ 주택형의 구부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 대지지분은「주택법」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의거, 주택 구입 비용(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 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 리의 표기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세대당 대지지분 계산과정에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전북은행에서 대출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충·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 현황(개발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 - 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eil-as.co.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외관 색채,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 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신청대상자	신 청 일 자	신 청 방 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1.11.(월) (청약 Home 인터넷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또는 스마트폰 앱 견본주택 방문 청약 노약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A	84A	84B	84C	합 계
	국가	유공자	3	4	2	1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3	4	1	1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4	1	1	8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2	4	1	1	8
	장애인	서울특별시	1	2	1	1	5
		인천광역시	1	2	1	1	5
	중소기업 근로자		3	4	1	2	10
	경기도 거주자(50%)		8	12	4	4	2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및 인천	过광역시 거주자(50%)	7	12	4	4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43	15	15	1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2	2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13	21	7	7	48
	합 계		74	119	40	40	27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 분	분	내용
공급기준	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차	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		–	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분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세대주 요건		l야 합니다 <u>.(</u>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	1. 공통 유의 사항" p.2 참조)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연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	-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	n'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자격 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청약예금의 예치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청약예금의 예치: 부산광역시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극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구 분	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 특 별시 및 특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청약예금의 예치 부산광역시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금액]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 특 별시 및 특 하 600만	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청약예금의 예치: 부산광역시 난원	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이상인 1순위자 금액]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 2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 분	관 련 법 규	해 당 기 관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추천기관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등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 있습니다.	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50%(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ui 저 ਨੇ. C	ᄎᄪᅯ	배점기준		u ¬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_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영국시·국교사사자 기준이고, 모든 모·국교사자도 기준이며, 구도권의 영구 시골·영기·전전 전세 - 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히	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대상자	현재 무주택기간0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L	ㅐ(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자	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액 이상)한 분					
	■ 당철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천					
	■ ①소득구분							
		I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5%)	세네의 글이번도 그에 단면도 도시는도시 기가 현무를 걸이번도 그의 100% 이하면 문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선정방법	4단계	(15%)	" " = 000 = 1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5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니	,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	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 ⁻	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 지역 : 해당지역 :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7	14속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ul O	소득금액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비고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ᄌᄗ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	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	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	(경기도 광주시 1년 이 (한 규칙」별표1(가점제 허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	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택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법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にいせてい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선정방법			0명	5	4명	25			
	② 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②T0/17T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 이즈 킨 킨 ᄎ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8세대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기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2단세	구심중급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선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E 7 H	шо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금액		내용				
		- 건축물가의	ば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	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ᅎ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一 一 一 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등 등재된 경우 * 「추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추지로서 소유자가「출산법」제22조에 따른 출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출산업 허가를		1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있는 경우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중하는 경우		
	3억3,100만원	건축물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인 건축물 주택 - 토지가액은 단, 아래 중 * 「농지법」 등재된 중 * 「초지법」 소재지와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경우로서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		

가점항목	가점상	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_ ■ 주민등록표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수에서 제외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35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가확인서류								
본인 제외)			3명	20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7	17	17	17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7				본 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
③입주자저축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 우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청약흠)								
		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슌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슌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 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u> </u>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 청 일 시	신 청 방 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1.1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
	1순위	2024.11.12.(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4.11.13.(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배우자 포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21.(목) ~ 2024.11.30(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1.2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선 - 이용방법 : 청약신 - 공고일 다음날부터 세대원의 청약자 세대원 등록방법 - 이용방법 : 공고단 청약홈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 약 체 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4.11.21.(목) ● 확인방법	• 일시 - 2024.12.02.(월)~2024.12.04.(수) (10:00~16:00)
이바고그	1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장소 -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경본주택
일반공급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 | 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4.11.24.(일) ~ 2024.11.26.(화)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포함)	(10:00~16:00)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현장 접수 시 포함)

서류유형		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공통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알(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0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0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토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해외근무자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 통보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자녀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또는	• 견본주택에 비치(임심 중인 경우 작성)
가구		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관한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기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7172/1100/11(0/11)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혼부부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유(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양자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생애최초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0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포함)로 7	· 산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0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0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 사항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시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소형, 저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자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	(신청 시	-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헌)"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② 세무서
자영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업자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전년도 제무재표 ⑤ 재직증명서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④,⑤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행정복지센터
	기타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이호 박행부에 하하며 해당 서르상이 성명 주민들로버호 뒤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박근박아야 한니다	② 해당 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서 류 구 분	확 인 자 격	증빙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홈텍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군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실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홈텍스) ③ ④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서 류 구 분		발 급 처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기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보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랍/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l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시향사유 및 발생알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공통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고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조기계조면 나사니!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추가서류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 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0	순위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직계존속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피부양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직계비속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청약자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청 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 사항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
		— TI	5113101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체다즈태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통보를	0		해당주택	• 소형, 저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자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의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송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학의 만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학이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숙 등에 의학이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로 전설하여 이를 보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송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리에 이하의 즉력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한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한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한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한한다 있으나 주력이 낡아 시작이 성당 입성되었기가 나 주택이 열심되었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조시 시업우제로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적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말심거되거나 설계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하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제점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공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기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라 건축하게 열차 전략을 입한 건축 당시의 법령에 대본 검험한 건물인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자기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건정하고 당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의) 11. 임차인으로서 보증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리한지 못한 사람이 임치주택을 경매 또는 공대로에 관한 규칙, 발표기 제1호가목으로 준용함) 나. 주게전용면적이 187제급환 조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작인으로서 거주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차인으로서 거주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차인으로서 거주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차인으로서 거주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차인으로서 거주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 및 요전하다 전략 기관을 말한다)이 2여원(수도권을 입혀된 기관을 보안되었다 것을 보다 기관을 보안되었다 보안 기관을 보안되었다 기관을 말한다)이 2여원(수도권을 함된으로 가격을 말한다)이 2여원(수도권을 말한다)이 2여원(수도권을 말한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 약 기 간	계 약 장 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12.02.(월) ~ 2024.12.04.(수)	고지아여 페이프경비 거부즈태/경기도 과즈나 소전도 (70.0)	
경엽자 계탁 제월	[3일간] (10:00~16:00)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 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하나은행	717-910026-31804	신영부동산신탁㈜

- 공급대금(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준	유 의 사 항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본인 계약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보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인지세 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함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6억 초과 주택의무 제출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상기 본인서류 일체	본인	• '본인 계약시' 서류 일체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 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2차,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2024.08월 기준 연 4.08%)와 가산금리 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합산하여 산정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 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 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60% 대출 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 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현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 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 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예정 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2개월 이전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맘스스테이션 등),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OF 11 TO 71	바그나 취자 고내그에	계약금(10%)	잔금(90%)
약식 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1,000,000	1,100,000	9,900,000
84A	15,400,000	1,540,000	13,860,000
84B	15,400,000	1,540,000	13,860,000
84C	15,400,000	1,540,000	13,86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 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717-910026-32404	신영부동산신탁㈜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합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 및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③ 비확장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비확장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는 배관 노출 및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⑤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비확장세대의 거실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⑦ 비확장세대의 경우 창호 및 발코니 난간의 높이·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거나 그 후 개별적인 발코니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②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계약자는 발코니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시공한 부위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발코니 창틀을 개별시공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결로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 세대 내 부분의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천장형 에어컨 위치(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상자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 높이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는 비확장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이중창틀,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

ıJe!	lol	주택형	설치	4410141	7770	계약금(10%)	잔금(90%)		모델명									
선틱	반	(약식표기)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실명	실내기	실외기								
	이비성				2,000,000	390,000	3,510,000	거실	AJ072BN1PBC1	A 1020A AVI INID.C1								
발코니	일반형	권디이	٥٦١١	7141 0186	3,900,000	390,000	3,310,000	안방	AJ032BN1PBC1	AJ030MXHNBC1								
비확장시	그그성	전타입	2대	거실+안방	4 400 000	440,000	3,960,000	거실	AJ072BN1PBC1	A 1020A AVI INID.C1								
	고급형				4,400,000	440,000	3,900,000	안방	AJ032BN1PBC1	AJ030MXHNBC1								
			2대	기시 . Oldb	2,000,000	390,000	3,510,000	거실	AJ072BN1PBC1	A 1020A AVI INID.C1								
			241	거실+안방	3,900,000	330,000	3,310,000	안방	AJ032BN1PBC1	AJ030MXHNBC1								
		59A						거실	AJ072BN1PBC1									
			4대	거실+안방+침실1, 2	6,600,000	660,000	5,940,000	안방	AJ032BN1PBC1	AJ050MXHNBC1								
								침실1, 2	AJ020BN1PBC1									
			3대	3대												거실	AJ072BN1PBC1	
					거실+안방+주방	5,400,000	540,000	4,860,000	안방	AJ032BN1PBC1	AJ040MXHNBC1							
발코니	이비성							주방	AJ020BN1PBC1									
확장시	일반형							거실	AJ072BN1PBC1									
		84A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 2	7,900,000	790,000	7,110,000	안방	AJ032BN1PBC1	AJ050MXHNBC1								
		84B						주방, 침실1, 2	AJ020BN1PBC1									
		84C						거실	AJ072BN1PBC1									
		6대	거실+안방+주방+침실1, 2+알파룸	9,700,000	970,000	970,000 8,730,000	안방	AJ032BN1PBC1	AJ060MXHNBC1									
								주방, 침실1, 2, 알파룸	AJ020BN1PBC1									

		عداا	71A1. OLHI	4 400 000	440,000	3,960,000	거실	AJ072BN1PBC1	A 1020A AVI IN ID C1
		2대	거실+안방	4,400,000	440,000	3,900,000	안방	AJ032BN1PBC1	AJ030MXHNBC1
	59A						거실	AJ072BN1PBC1	
		4대	거실+안방+침실1, 2	7,400,000	740,000	6,660,000	안방	AJ032BN1PBC1	AJ050MXHNBC1
						침실1, 2	AJ020BN1PBC1		
							거실	AJ072BN1PBC1	
		3대	거실+안방+주방	6,000,000	600,000	5,400,000	안방	AJ032BN1PBC1	AJ040MXHNBC1
고급	급형						주방	AJ020BN1PBC1	
	84A						거실	AJ072BN1PBC1	
	84B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 2	9,000,000	900,000	8,100,000	안방	AJ032BN1PBC1	AJ050MXHNBC1
	84C						주방, 침실1, 2	AJ020BN1PBC1	
	040						거실	AJ072BN1PBC1	
		6대 :	 거실+안방+주방+침실1, 2+알파룸	11,000,000	1,100,000	9 900 000	안방	AJ032BN1PBC1	AJ060MXHNBC1
		0-11	712:00:10:10:121, 2*2MB	11,000,000 1,100,000		9,900,000	주방, 침실1, 2, 알파룸	AJ020BN1PBC1	FOODOWAL HADCT

[※] 비확장형 선택 세대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거실/안방 2개소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위치 등은 확장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전(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사항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식용사망	모일정	(약식표기)	중합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0177
	ᆸᇫᇴᆿᆝᄖᅑᄓᄼᄖᅑᅡᆛᄖᇹᆞᄁᅼᄔᄖᅑᄓᄀᄾᆝᄖᅑᄀᅑ	RR40C79(8)95AP(냉장)	59A	7,000,000	700,000	6,300,000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냉장고장	RZ34C79(8)65AP(냉동) RQ34C79(8)45AP(김치)	84A,84B,84C	7,800,000	780,000	7,020,000	
		T506-45TSL	59A	900,000	80,000	720,000	
주방	독립형 렌지후드	T506-45TBL	84A, 84B, 84C	800,000	30,000		
	인덕션(3구)	IHFB3000N		700,000	70,000	630,000	
	전기오븐	NQ36A6555CK	전타입	450,000	45,000	405,000	
	식기세척기	DW60T7065SS		900,000	90,000	810,000	
안방	전동 빨래건조대	N4010-R	84A, 84B	150,000	15,000	135,000	

[※] 상기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가전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인테리어(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59A 인테리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8		져오비송	H+I HOI	7770	계약금(10%)	잔금(90%)	ul ¬
(약식표기)	구분		적용사항	설치 부위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비고
	중문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현관	1,800,000	180,000	1,620,000	
	도어		3연동 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	1,800,000	180,000	1,620,000	
	바닥마감 특화		거실/주방/복도 바닥 에디톤	거실/주방/복도	2,400,000	240,000	2,160,000	
		1	거실 아트월 타일	거실 소파 뒷벽	1,100,000	110,000	990,000	
	벽면 특화	2	복도 아트월 타일	침실1~2사이 복도	800,000	80,000	720,000	
59A	그는 극의	3	복도 시트 판넬 (가구 FIX 포함 / 주방 뒷벽 포함)	침실1, 2 맞은편 복도 주방 뒷벽 포함	1,000,000	100,000	900,000	
	주방 특화		주방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상부장 간접 조명, 팝업 콘센트 포함)	주방 벽체/상판	4,100,000	410,000	3,690,000	
		1	거실 조명 고급화 (실링팬+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거실	2,200,000	220,000	1,980,000	
	조명 특화	2	주방 조명 고급화 (마그네틱 조명+라인판넬)	주방	1,500,000	150,000	1,350,000	
		3	거실/복도 라인 조명	거실/복도	900,000	90,000	810,000	

• 84A, 84B, 84C 인테리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ם		ĦO II Š	서비 티이	설치 부위 공급금액		잔금(90%)	ul ¬
(약식표기)	구분		적용사항	열시 쿠퀴			입주지정일	비고
	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현관	1,800,000	180,000	1,620,000	
	도어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A, 84C 드레스룸	1,800,000	180,000	1,620,000	
	도어+시스템가구		2면 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84B 드레스룸	6,100,000	610,000	5,490,000	
	바닥마감 특화		거실/주방/복도 바닥 에디톤	거실/주방/복도	3,300,000	330,000	2,970,000	
		1	거실 아트월 타일	거실 소파 뒷벽	1,200,000	120,000	1,080,000	
	벽면 특화	2	복도 아트월 타일	침실1~2사이 복도	800,000	80,000	720,000	
84A		3	복도 시트 판넬	욕실1~침실1 사이 복도	300,000	30,000	270,000	
84B	7W 54	1	대면형 주방+장식장+팬트리 시스템기구+가구FIX판넬 (주방/복도 팬트리 가구도어+아일랜드장 고급 팝업 콘센트 포함)	주방+알파룸	6,800,000	680,000	6,120,000	
84C	주방 특화	2	벽/상판 세라믹타일 (상부장 간접조명 포함)	주방 벽/상판	4,800,000	480,000	4,320,000	주방특화 ① 대면형주방선택시 가능
		1	거실 조명 고급화 (실링팬+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거실	2,400,000	240,000	2,160,000	
	조명 특화	2	주방 조명 고급화 (마그네틱조명+우물천장 리니어 조명+라인판넬)	주방	2,100,000	210,000	1,890,000	주방특화 ① 대면형주방선택시 가능
				84A, 84B 거실/복도	900,000	90,000	810,000	
		3	거실/복도 라인 조명	84C 거실/복도	1,000,000	100,000	900,000	
					·			

(4)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 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하나은행	717-910026-32404	신영부동산신탁㈜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5)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에디톤, 타일, 시트판넬 등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문제작 또는 설치·시공 공사의 진행 등에 의해 설치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수(자재의 발주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이후에는 "을"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아트월, 세라믹 타일, 주방 상부장, 시트판넬 등 색상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타 주택형의 색상 등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착수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기본 냉매배관(거실 스탠드 및 안방 벽걸이) 및 콘센트를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결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 바닥배수는 미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고, 유선 컨트롤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홈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일반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권의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59A,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는 1,2,3층 세대의 천장고(2.5m)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4층 이상 세대의 천장고는(2.3m)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 이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기본, 확장,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표기 사항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 설치 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 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가 미러 타입일 경우 본 공사 시 세대 내 가구, 가전 등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월패드, 주방TV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류는 본 공사 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 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문주,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공공보행통로, 역사공원,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쓰레기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 부대시설용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패턴 및 재료, 출입구, 램프계획, 주변 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의 개수는 각 동별로 배치되지 않으며 일부 동은 이용거리가 타동에 비해 불편할 수 있으며 일부 쓰레기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 시 확인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제 시공 시 제품의 품귀, 품절 등 사항으로 인해 동급 및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견본주택용으로 시공된 것으로 본 공사 시 환기성능 및 관계 법규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견본주택용으로 시공된 것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며.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주택형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 및 옵션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통합부전반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다용도실 바닥 단차는 본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인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 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 및 홈페이지 게시 영상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 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학교 배정

• 본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곤지암초등학교, 중학생은 곤지암중학교로 배정 예정입니다.

■ 단지 계획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VII•0.197g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공간활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의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야산 및 농가, 기존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 고가철도(경강선)가 위치(이격거리23m, 높이10m) 있고 또한 공공보행통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 사업지 대지경계 외부에 대한 사항은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에 위치한 고가철도로 인한 조망권, 환경권 침해 특히 기차 및 지하철 이동 간 소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철도, 송전탑, 분묘,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환경과 개발계획을 사전에 반드시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상 단지 서측에는 준주거용지, 단독주택 용지 / 단지 동측에는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 단지 남측에는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 역사공원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당 사업지의 준공 및 입주 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비양산 및 야산에는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 침해 및 전자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학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남측 및 중앙에는 역사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공사 범위가 아니며 문화유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 및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역사공원 방문객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수 있음. 또한 해당 공원의 수목,수풀, 휀스 등의 관리는 사업주체가 아닌 관계기관에 있음을 인지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및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중계기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101동 3·5호 라인, 102동 1~5호 라인, 103동 1·2호 라인, 104동 3·5호 라인, 105동 3·5호 라인, 106동 2호 라인, 107동 3·5호 라인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본 공사시 위치 변경 가능)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방해, 빛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지붕층 바닥마감은 노출우레탄 방수 재질로 빛반사,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지붕층은 일부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경관조명계획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분양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 또는 현장 여건에 따른 구조검토내용에 따라 위치,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101, 102동의 저층 세대는 문주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 부위는 추후 조경 계획 변경 및 동선 계획 변경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DA 등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지에 대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문주 조명 및 차량 경광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빛 공해 및 소음으로 인해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의 형태, 규모, 디자인 등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지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반영하여 아파트용 1개소,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공용 1개소가 각각 설치되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 진동, 비선먼지,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비상 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102동, 103동, 104동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우수조, 펌프실 설치로 진동, 소음,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각 동별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 층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높이는 2.7m, 너비는 7.0m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 및 너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하1층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3m이며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입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동 1층에는 부대시설(101동•경비실, 맘스스테이션, 102동•관리사무소, 돌봄센터, 102동 남측•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104동•근린생활시설, 107동•경로당)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진동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동 위치에 따라 이용 동선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대시설의 위치이동 및 이용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쓰레기 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 주민운동공간이 조성되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정 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지하층 일부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 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용량은 실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램프 미끄럼방지 및 외부에 인접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자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각 주거동의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 보관시설물(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보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대지경계 안쪽으로 전면에 투시형 휀스(약 1.2m)가 설치될 예정이나 각종 홍보물(단지 모형,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조환경분석결과 일부동(103동 59.30%, 104동 54.17%)의 수인한도 만족비율이 60%미만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행기금 출연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입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분양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결로, 결빙, 물고임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등) 등에 의하여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Dry Area_급배기타워)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 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A(Drv Area 급배기타워)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101동, 102동 북측 주출입구 인근에 정압기 또는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 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재활용생활폐기물창고가 계획되어 있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지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계단실 창호는 최상층 포함 3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으로 설치되고, 그 외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픽스창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변경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각 시설의 실외기실 및 옥상공간(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 시설은 입점자 공사분입니다.)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계획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욕조 후면에는 원칙적으로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단 수평 구배, 방수 등 기능 상승을 위해 여분 타일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기법의 일환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고정형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파우더가구 등) 상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의 가구 계획은 견본주택 건립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기본형 제공품목 및 확장 시 지급품목, 별도 유상 선택 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도서상의 단위세대에 표기된 점선 표현은 가구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으로 실제 시공되는 부분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부전반,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분할치수,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발코니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 옆 세대 단열을 위해 발코니 크기가 축소될 수 있고 상부 세대의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위세대평면 설계 시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거실, 침실, 주방 등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 가구 등의 설치가 불가하거나 실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 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840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의 경우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생활습관에 따라 새시,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관통 슬리브가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 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됩니다.
-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는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복도 또는 전용 보일러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됨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 디퓨져 사양,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장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환기캡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화장실 세면대 하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해당세대용 분배기로서 벽체형 오픈수전함으로 시공되며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 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본 시공시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 장 설치 또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다용도실)은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제조사별 세탁기, 건조기의 사양(폭, 크기, 높이 등)에 따라 병렬로 설치할 경우, 설치가 불가하거나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수 있으니 입주 전 설치공간의 유효크기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된 소방배관, 기계배관 및 덕트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충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 개방 시 부주의에 의해 아래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출입문 방향 및 하부 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 소음 발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실외기실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샤워부스,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바닥 일부에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실외기실은 에어컨 배수배관, 냉매배관 및 관통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고,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소방 및 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식재 최소화 혹은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loT관련 사항

-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 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홈네트워크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l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l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l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및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미구현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4-101-0002500호	₩220,675,35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화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아니지학유등급 이를 및 제목에너지건축용 인증에 관한 규칙(택지 IX 6호 서십)±건점 2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민준변호 : 24-주-(R-15-0005) 평가자 : 박원무 인출기관: 한국교육독대환경연구원 문설기관: 한국교육도대환경연구원 유효기간: 사용증인 보는 사용경사 연료원 * ± 1/828 / NASSE 연면적 건축별의 주원 중도 인충동급 건축물 에너지호물등급 평가결과 합위전적당 당위전적당 당위전적당 매너지요구함 (WWV/미·년) 메너지소요함 (WWV·미·년) 1차 메너지소요함(WWV/미·년) CO. H & P. (4g/#-H) 표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편 [V]설치되지않은)건축물합니다. 표 예비안용을 받은 건축물은 단금 후에 본안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반경에 따라 안공설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점여정당 (회에나고소요한은 중도 중에 따른 보장계수를 반영한 경계합니다. WINESS THURSE BY DWG. BITTER THESE MICHIGES HE S DEMINDRES HES HE DE. 7 STATE 2024 M 04 W 24 W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현 0 시장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제 2024-101-050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01 # 디아이지훈딩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8, 배민빌딩 4중 (역삼동) 이쁨 곤지암역세권A 1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6 ♥ 아파트 □ 업무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구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동급 □ 1등급 □ 2등급 홍네트워크건물 □ AAA(答IoT) □ AA □ A

2024년 10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기초나나 서계기조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기계나다 서계기즈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7조제2항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유)남양기술단	㈜수양엔지니어링
감 리 금 액	₩1,966,820,900	₩587,063,901	₩121,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	신영부동산신탁(주)	디와이지홀딩스(주)	제일건설(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88, 4층(역삼동, 배민빌딩)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78, 가동 2층
등록번호	110111-7126835	110111-5715680	135811-00936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99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형태: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사업계획승인: 2024-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디와이지홀딩스(주)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제일건설(주) 간에 2024년 7월 22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 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제일건설(주)가 부담합니다.
-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